

#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·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415
----------	-----------

제안연월일 : 2023년 3월 10일  
제안자 : 행정자치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- “다중운집 행사” 정의를 지난해 12월 30일 제정·시행된 「서울특별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」 제2조제1호에 정의된 “다중운집 행사” 정의를 포함하여 규정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내용

- “다중운집 행사”에 주최·주관하는 자가 없이 특정장소에 불특정 다수가 자발적으로 모이는 경우도 포함하도록 함(별표 1, 비고 3 신설).

#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·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·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 
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비고 3: 위 표의 다목 중 ‘다중운집 행사’에는 주최·주관하는 자가 없이 특정  
장소에 불특정 다수가 자발적으로 모이는 경우도 포함한다.



##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

###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·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·운영 등에 관한 조례  
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비고 1: 위 표의 나목 지역 내 교통 활동에 관한 사무 중 「도로교통법」  
제2조제3호의 고속도로에서 이루어지는 사무는 제외한다.

비고 2: 위 표의 가목 ‘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’중  
‘지역 내 주민’은 ‘지역 내에 일상생활의 상당부분을 영위하는 모든  
사람’으로 본다.

비고 3: 위 표의 다목 중 ‘다중운집 행사’에는 주최·주관하는 자가 없이 특정  
장소에 불특정 다수가 자발적으로 모이는 경우도 포함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[별표 1]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생활안전, 교통, 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 및 범위(제2조 관련)</b></p> <p>가. ~ 다. (생략)</p> <p>비고 1: (생략)</p> <p>비고 2: 위 표의 가목 ‘지역 내 주민의 생활 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’중 ‘지역 내 주민’은 ‘지역 내에 일상생활의 상당부분을 영위하는 모든 사람’으로 본다.</p> <p>&lt;신 설&gt;</p>	<p>[별표 1]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생활안전, 교통, 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 및 범위(제2조 관련)</b></p> <p>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</p> <p>비고 1: (현행과 같음)</p> <p>비고 2: 위 표의 가목 ‘지역 내 주민의 생활 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’중 ‘지역 내 주민’은 ‘지역 내에 일상생활의 상당부분을 영위하는 모든 사람’으로 본다.</p> <p>비고 3: 위 표의 다목 중 ‘다중운집 행사’에는 <u>주최·주관하는 자가 없이 특정장소에 불특정 다수가 자발적으로 모이는 경우도 포함한다.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부 칙</b></p> <p>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